	배우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청평교육	**청평 가정 통신**	발행인: 청평초등학교장 담당자: 이현미

불법찬조금 예방 안내

학부모님께

참 좋은 계절입니다.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, 신뢰가 가득한 학교 교육 만들기를 위하여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
교육 가족과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신뢰받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법찬조금 유형

○ **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**

▶ 대회출전비, 운동부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

▶ **운동부 대회성적 등을 기반으로 학부모부담금으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승리수당, 성과금 등 지급**

○ **예술학교 학부모회에서**

▶ **정기공연, 워크숍 등에 필요한 소품 구입, 운영비 등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**하여 집행

○ **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**

▶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**학생 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(스승의 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, 졸업식 등), 교직원 선물비,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·모금**하여 집행

○ **교직원 등이**

▶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
○ **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**

⇒ 법원에서 제공자인 **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**

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의 비교

<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>

학교발전기금	구분	불법찬조금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	조성명의	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
–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· 조성 ※ 홍보시 “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된다”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–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	조성방법	–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※ 일정액 할당, 납부서 일괄배부,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–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음
–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–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–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–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사용목적	–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※ 교직원의 각종수당(인건비), 여비,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 등 ※ 각종 협의회비, 간담회비, 선물비, 화환 등

□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

< 불법찬조금 신고처 >

홈페이지	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(www.goegp.kr) → 전자민원 → 사이버신고센터 → 불법찬조금 신고센터
전화신고	· (경기도교육청 감사관) ☎ 031-820-0885 · (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(센터)) ☎ 031-580-5191
국민신문고	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 → 민원

2022. 5. 26.

청 평 초 등 학 교 장

청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